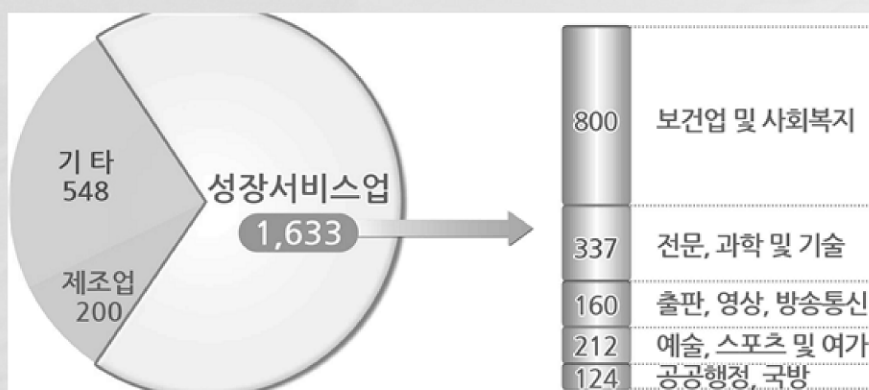


□ ‘13-’14년 정책 인프라 법 제도 구축 등 기반조성을
통해 ‘15년 이후 고용률 증가폭 확대 전망



○ 신규 창출되는 238만개의 일자리는 문화 과학기술 보건
복지 등 창조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 창출



○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전체 증가 일자리의 3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12년 149만개에서 2017년 242만개로 93만여개 증가

Ⅲ.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1. 개념 및 의의

○ □ 추진배경

- ○ OECD 유럽 국가들에서는 1990년대부터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역중심의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진행. 지역의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지역거버넌스(Regional / Local Governance)를 구축하여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발전.
- ○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경향을 수용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고용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지역에 권한 배분 전략 채택

○ □ 개념 및 의의

-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목표와 구체적인 일자리대책을 공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지역 고용 활성화 대책
- ○ 고용인적자원개발 분야 지방분권화의 방향으로 진일보한 정책. 더불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주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책임성 강화.

○ 2. 추진방향

○ □ 자발적 일자리창출 지원

- ○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모델 구축하도록 지자체의 자발적인 일자리창출 노력 지원

○ □ 중앙지방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하며, 중앙정부는 컨설팅,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우수사례 확산

○ □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 ○ 지자체와 지역의 다양한 고용 관련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고용심의회(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포럼 등과 연계하여 효과성 제고

[그림 1-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기본방향



- 3. 추진현황
- □ 시행주체
-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격으로 고용노동부간 MOU 체결
- ○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가 참가
- □ 시행기간
-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민선 5기 지자체장 임기('10.7.1 ~ '14.6.30)와 연계하여 추진
- ○ 매년 일자리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연간 실적을 익년도 초에 평가

○ 4. 추진 절차

- ☐ 지역일자리 목표와 대책 수립
- ○ 일자리 공시는 크게 지자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구성
- ☐ 종합대책 수립 및 공시
- ○ 종합대책은 지자체장의 임기 동안 달성할 일자리창출 목표와 추진할 대책
- - 민선 5기에는 2010년말에 종합대책 수립 및 공시
- ☐ 세부대책 수립 및 공시
- ○ 세부대책은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연도별로 달성할 일자리창출 목표와 추진할 일자리 세부대책
- -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일자리세부대책 수립 공시
- -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6월말까지 수정공시 가능

○ ☐ 평가 및 시상

-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참가 지자체에 대해 매년 2월 전년도 일자리 대책을 전반적으로 평가
- ○ 지역고용창출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및 노력에 대해 계획 수립→계획 집행→추진 성과 중심으로 심사
- ○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정된 3개 분야 평가항목(7개)의 달성도를 평가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안)
계획수립	20	일자리 목표의 타당성, 일자리 대책의 타당성
계획 집행	40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추진계획의 진척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홍보
추진 성과	40	목표 달성도, 일자리대책의 효과성

-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성과에 연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
- 지역일자리 정책 한마당을 개최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대통령상 등 시상하고 상사업비 배정



[그림 1-2] 평가 체계

[그림 1-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절차



○ 5. 일자리 공시의 내용

○ □ 지역일자리 목표와 대책

- ○ 일자리 공시는 크게 지자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구성
- ○ 일자리 목표는 공통목표와 개별목표로 구분하였고 공통목표는 해당 자치단체의 고용률과 취업자수를 제시하고 개별목표는 5개 분야별 목표치 제시.
- - 5개 분야: 일자리창출,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일자리인프라 구축, 지역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 ○ 일자리 대책은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할 사업계획으로 5개 분야별로 제시.

목 표	분 야	일자리 대책 제시
공통목표	고용률	
	취업자수	
개별목표 - 일자리대책 분야별목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친화적인 산업 발굴·육성, 산업단지 조성 •내·외국 기업의 투자유치,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타 일자리 창출 대책
	취업지원 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실적 확대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인력부족업체 빈 일자리 해소 •기타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치 해소 대책
	직업훈련 추진	•기업·근로자·실업자 등 직업훈련 지원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직업훈련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타 직업훈련과 관련한 대책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예산(전체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확보 및 적절한 집행 •일자리 대책 전담기구 운영, 인력 확충, 조례·규칙 제·개정 •취업알선망 확충 •기타 일자리대책 관련, 인프라 구축
	지역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일자리 대책 관련, 국가기관, 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 다 기관과 연계·협력 •타 기관과의 일자리 협력 관련 MOU 체결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협조, 공동 사업 추진 •기타 유관기관 협력

IV. 로드맵에 따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내실화 방안

- ☐ 고용률 중심의 지방행정
- ☐ 고용률 70% 달성이 국정의 중심에 자리하듯이 지방에서도 고용률 중심의 행정이 필연적이며 자치단체의 일자리책임성이 대폭 강화
- ☐ 단체장은 지역의 창조경제와 고용률 제고에 행정력 집중 예상
- ☐ 지역 산업 경제대책을 고용률 제고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일자리 친화적 현장중시 대응방안 마련 추진 필요
-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의무화
- ☐ 지방정부와 고용노동부간 MOU 체결로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전환
- ☐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성과를 각종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 ☐ 정부합동평가(안행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고용부), 신특화사업(산업부) 예산배분 등에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정도 반영

- ☐ 광역시도의 평가지표를 일자리창출에서 고용률로 변화
- ☐ 광역지자체의 경우 일자리창출 목표치가 아니라 고용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연말에 달성도를 점검받게 됨
- ☐ 고용률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로서 일자리의 소멸과 창출이 동시에 고려되어 순일자리로 계산된 수치
- ☐ 기존의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는 소멸되는 일자리수는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고용률 목표에서는 일자리소멸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 지자체별 일자리에 대한 개념적용이 일치하지 않아 작성 및 통합과 비교에 어려움
- ☐ 각 시군구의 일자리합계와 생산가능인구가 광역시도의 고용률을 결정하게 되므로 광역시도의 시군구에 대한 일자리문제에서의 영향력 강화가 필연
- - 취업자 수 및 일자리 목표 수립 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목표치 협의 및 조정 필요
- - 기존에는 광역시도의 일자리창출(혹은 취업자수) 목표가 기초시군의 일자리목표(혹은 취업자수)의 합과 일치하지 않았음